

# Meta와 X의 불법성

2025. 4. 16(수)

법무법인 지향 (Jihyang Law Firm)

변호사 이은우

# Facebook, Instagram, X

이용자 개인정보 AI 학습  
습 데이터 이용 특징

- 정의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에 사용
-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제한 없음
- "특정 목적"에는 제한이 없음
- 시간 제한 없는 개인정보 사용
-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가명화 없음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 동의자와 비동의자(처리중지요구자)의 정보 분리 불가능
- 개인정보는 처리 중지를 요청해도, 한번 학습 개인정보로 이용되면 AI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음

# Meta (Facebook, Instagram) X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기로  
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음.

- Meta의 주장 :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적 근거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라 함.

- X의 주장 : 동의를 받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Meta**의 주장 :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적 근거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라 함.
- **X**의 주장 : 동의를 받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 정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음!

-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i) 합법적이어야 하고(lawful)
  - (ii)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clearly and precisely articulated)
  - (iii) 실제적이고 현존하고, 추측에 의한 것은 안됨(real and present, and not speculative)

목적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Meta 및 X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

- ‘AI at Meta 개발 및 지원’
-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

즉, 이는 모든 종류의 AI 모델, 기술,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 필요한 최소한에도 위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Meta** 및 **X**의 경우: 아래의 갖가지 정보들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산한 정보
-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
-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결코 우선하지 않음!

##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즉, 이익형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우 광범위하고 또 민감한 SNS 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고지와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I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불충분
-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은 실로 방대하며,  
•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휴면 상태로 있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
- 한번 AI 학습이 된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 안전조치 의문

이익형량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음.

Meta 및 X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도 않다.



# 민감정보 적법처리

SNS에는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병이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도 있다.

민감정보의 경우

-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SNS에서는

-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가 분리할 수 없이 섞여 있고,
- 동의자와 비동의자의 정보 역시 구분하기 힘든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민감정보에 대해서 분리, 제거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의 이용자에게는

고지도

안해

Meta와 X는

위법하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용자는

고지 시점에 (사전 또는 사후)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고지 이후 언제든지 관련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마저  
(모르는 사이에) 박탈당한 것이다.

# 사후 처리정지권은 보장될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보장

Meta와 X는

현재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 한글 버전에서 그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며,
- 해당 기능을 찾아 몇 단계 클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권한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다.
- 이용자가 법에 따라 처리정지권을 요구하면, 과연 사후 처리정지가 될까?

유럽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 NOYB의 선도적 대응

- 2007년 이후 수집한 이용자들의 공개 및 비공개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Meta**에 대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지적(2024년 6월 6일)하고 11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의 DPA(정보보호기관)에 긴급절차를 통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
- 또한 **X**에 대해서도 9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

# 해외 국가별 대응

- 브라질 개인정보감독기구(ANPD)는 **Meta**에 AI학습중단명령(2024년7월)  
- 이후 조건부(사용자에게 30일전 데이터처리사실과 거부권 통지) 허용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Meta**에 대해 콘텐츠를 사용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연기를 요청,  
**X**와는 'Grok' 학습 목적의 데이터처리 중단 합의(2024년8월8일)
- 영국단체 Open Rights Group은 **Meta**를 신고(2024년7월15일)  
- UK's ICO(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에서 조사중
-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는 **X**를 조사(2025년2월27일 보도)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위반 해당여부

감 사 합 니 다

